

보 도 해 명 자 료 (15. 6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절전 외치더니 더 싸라?...’원전’ 명분 쌓나”

(15.6.23, 경향신문)

1. 보도내용(요지)

- ☐ 이번 전기요금 할인 조치는 전기과소비를 유도해 하계 피크를 끌어 올려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
- ☐ 주택용 할인은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되고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음
- ☐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년도 안돼 뒤집어진 셈이며, 피크 전력 관리를 포기한 것임
- ☐ 전기요금 인하로 동·하계 수요억제를 위해 도입한 계절별·시간대별 요금제가 무력화될 우려
- ☐ 중유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%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에 모든 비용을 떠 맡으라고 한 셈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금번 조치는 한전의 연료비 절감과 이로 인한 재무적 성과 향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발전소 추가 건설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님
 - 특히, 주택용 할인은 그간 누진제로 인한 ‘요금 폭탄’ 현상을 완화해야한다는 국회, 언론 등의 제기사항을 반영한 것임
- ☐ 주택용 할인과 산업용 토요일 요금 부담 경감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로서 주택용이 하계 전력피크에서 차지하는 비중(12.0%)이 작다는 점, 주택용의 과소비 구간(601kWh 이상)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, 산업용 제도 개선으로 평일의 높은 전력수요를 토요일(평일 최대 부하의 85% 수준)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전기 과소비를 유도하거나 하계 피크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님
- ☐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지할인(월 최대 8,000원 할인) 대상자 외에 제도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등 총 86만 5천호에 대해 복지할인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과 서민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음
 - 아울러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보증제도 부담 완화, 저압공급 확대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시행
- ☐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님
- ☐ 주택용의 경우 현재 계절별·시간별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, 계절별·시간별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의 경우는 금번 개편으로 계절별·시간별 요금제를 활용해 평일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하는 효과를 지향하고 있음
- ☐ 유가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연료비 하락과 당기순이익 발생은 전기요금의 할인 여력으로 작용하며, 최근 한전의 재무적 성과로 볼 때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

*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 장(044-203-5260)
김태현 사무관(044-203-5264)